
해 명 자 료

“이계철 후보자, 겸직 금지 의무 위반” 관련 입장

’12.2.28.(화) 경향과 아시아경제 등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“이계철 후보자, 겸직 금지 의무 위반”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달라 후보자 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 주요내용

- 후보자가 (구)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임 당시(’02.5~’08.12)에
 - ①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‘에이스애포트너스’와 ‘에이스테크’가 (구)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무 연관 회사였으며,
 - ② 상장사 사외이사를 겸직(’05.1~’06.5)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‘공기업·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’ 위반이라고 주장

□ 해명 내용

[인증·진단 대상 관련]

- 에이스테크놀러지 및 에이스안테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회사로서 (구)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수행한 ①정보보호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며, ②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바 없으며, ③해당기업 생산품목이 보안성 제품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, (구)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었음
- ※ 후보자는 에이스테크놀러지(’97.6월 설립)의 고문으로 ’05.1월~’06.2월까지 활동했으며, 에이스안테나(’06.3월 설립)의 사외이사로 ’06.3월~4월까지 두달간 재직함

[겸직금지 위반 관련]

- ‘공기업·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’은 기획재정부가 ’10년 12월에 발간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 참고용 안내서 (정식명칭 : 공기업·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매뉴얼)임
 - 또한, 후보자의 에이스안테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은 ’06.3월~4월로 동 매뉴얼이 작성되기 이전의 일로 소급 적용될 수 없음
 - 아울러, 동 매뉴얼의 규정은 상법 제397조의 회사의 이사에 적용되는 동종 영업 또는 경쟁 관계 회사로의 경업(競業)·겸직 금지의무를 준용한 것으로
 -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민법」의 적용을 받는 ‘한국인터넷진흥원’과 안테나 제조업체인 ‘에이스테크놀로지’·‘에이스안테나’와는 동종 영업·경쟁 관계로 볼 수 없음
- 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: ⑤ 인터넷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의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
인사청문준비전담팀**